

## 변경대비표

코람코부평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호(이하 "본건 펀드")의 신탁계약서 변경사항

- 아 래 -

1) 변경조문: 신탁계약 제5조(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) 제3항,  
제39조(보수) 제3항 변경의 건

2)시행일: 2016-01-19

3) 변경사항

관련 조문	변경 전	변경 후
제5조 (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 계약기간) ③항	③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5 년간으로 한다. 다만,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	③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<b>2016년 1월 19일부터 2</b> 년간으로 한다. 다만,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
제39조 (보수) ③항	③ 생략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 분의 4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 분의 1.21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 분의 0.40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,000 분의 0.17	③ 생략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 분의 4 ( <b>VAT 별도</b> )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 분의 <b>0.10</b>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 분의 0.40 ( <b>VAT 별도</b> )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,000 분의 0.17